

사천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장



제292호 2012. 7. 12(목)

조례

- 사천시 조례 제1006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사천시 조례 제1007호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4
- 사천시 조례 제1008호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
- 사천시 조례 제1009호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사천시 조례 제1010호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 19
- 사천시 조례 제1011호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 22
- 사천시 조례 제1012호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 사천시 조례 제1013호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25
- 사천시 조례 제1014호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7
- 사천시 조례 제1015호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 28

규칙

- 사천시 규칙 제515호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29

훈령

- 사천시 훈령 제260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40

고시

- 사천시 고시제2012-120호 고시문 66
- 사천시 고시제2012-121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68
- 사천시 고시제2012-436호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사항 고시 71

회 람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 831-2215 · FAX 831-6011

사천시 공보

제292호(2)

조례

사천시 조례 제100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5일

사천시장 정만규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경상남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掌한다.
-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로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전시공보

제292호(3)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 ·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공보

제292호(4)

사천시 조례 제100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5일

사천시장정만규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 개방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응자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농어업”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말한다.
- “농어업인” 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사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금을 응자 지원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 기한은 조성완료 연도로부터 20년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사천시공보

제292호(5)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조성의 목표액은 6년 이내 100억원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어업인 등의 경쟁력 강화 사업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융자하는데 사용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지원 및 회수와 채권확보 등 기금 융자에 관한 관리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위탁관리 협약에 따르고,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특별회계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사천시 농어업발전 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기금관리관, 담당과장은 기금출납관,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경리절차는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4조의 재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에서 규정한 용도로 한다.

제9조(융자재원) ① 지원대상자에게 융자할 재원은 제4조에 따라 적립되는 기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충당금액은 시장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융자계획의 수립) 시장은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액, 융자 취급절차 및 대출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 등에 관하여 당해연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사업) ① 제9조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융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등의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

사전시공보

제292호(6)

2. 설비 및 기자재 확충 · 개선을 위한 시설 자금
 3.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
② 그 밖에 제1항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지원신청) ① 농어업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 · 면 ·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읍 · 면 ·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대상자 선정) 제11조에 따른 신청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자 선정은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 자 중에 제10조의 융자계획에 따라 시장이 확정한다.
- 제14조(융자금의 통지 및 신청)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사업이 확정된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지원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농어업인 등이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15조(융자방법 및 조건) ① 제14조에 따라 융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 ② 융자금의 회수에 따른 대손책임은 금융기관에서 진다.
- ③ 해당연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융자금액의 용도별 지원비율은 농업분야 80퍼센트, 수산분야 20퍼센트를 지원한다.
- ④ 제3항의 지원 비율은 신청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⑤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 ⑥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은 5천만원, 생산자단체의 경우 1억원, 법인의 경우 3억 원으로 하며, 소요자금의 70퍼센트 까지 지원할 수 있다.
- ⑦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융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이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사천시공보

제292호(7)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융자금을 받은 자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겼을 때
5.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금융기관의 요청 등 융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제17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준용·운영한다. 다만 수산분야의 심의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제87조에 따른 사천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융자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사후관리) 시장 및 금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지원대상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의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분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공보

제292호(8)

사천시 조례 제100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5일

사천시장 정만규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사전시공보

제292호(9)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 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 · 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⑥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 관리) ① 시장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 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사전시공보

제292호(10)

-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다.

-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천시 공보

제292호(11)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 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3.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및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매월 정례일을 정해 수도·빗물사용 수량을 점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여 적용한다.

④ 시장은 빗물 이용시설의 가동,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사천시 공보

제292호(12)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하며,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용개선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사용개선 명령 후 3개월 이내 빗물 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기 감면한 수도요금 1년분을 회수한다. 다만 1년 이하의 수도요금을 감면하였을 때는 감면한 요금을 전액 회수한다.

⑥ 권장대상 미만 소규모 시설물이라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⑦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 받는 자에게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따른다.

제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사천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개발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물 재이용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사천시공보

제292호(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사천시 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사천시공보

제292호(14)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	-----	-----	---------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m^2)
지붕면적(m^2)		빗물 저류조 용량 (m^3)
지붕의 빗물 접수 면적(m^2)		
빗물 이용 예정 수량 (m^3 /일)		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 (m^3 /일)		빗물처리방법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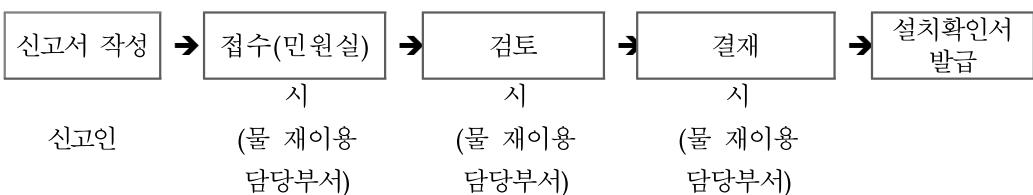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처리절차



210mm×297mm [일반용지 60g/ m^2 (재활용품)]

사천시 공보

제292호(15)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시설 설치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 설치 명세	시설 위치		
	시설 용량	m ³	
	사용 용도		
	설치 비용	원	
	착공 일		완료 일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사천시 공보

제292호(16)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m^2)		
중수처리 용량(m^3 /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m^3 /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빗물처리 용량(m^3 /일)			
중수의 주 용도			
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수도의 안정성	수질 악화 시 대책		
	오접(誤接) · 오음 (誤飲) 방지대책		
	환경 보존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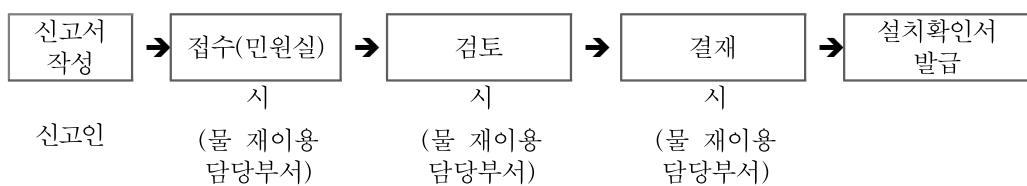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 m^2 (재활용품)]

사천시 공보

제292호(17)

[별지 제4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

건축주 성명	
건축물 주소	
중수처리방법	
중수처리 용량(m^3 /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m^3 /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장 작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m^2]

사천시 공보

제292호(18)

사천시 조례 제100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12일

사천시장 정만규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5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공보

제292호(19)

사천시 조례 제101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12일

사천시장 정만규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를 “사천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를 “「자연환경보전법」에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연경관 보전”이라 함은] 을 [“자연경관 보전”이란] 으로 하고, 제2호 중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라 함은] 을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란] 으로, “토지의 형질변경등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제3호 중 [“푸른사천”이라 함은] 을 [“푸른사천”이란] 으로, 제4호 중 [“가시지역”이라 함은] 을 [“가시지역”이란] 으로,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도로법」 제8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로 한다.

사전시공보

제292호(20)

제2장 자연경관의 보전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법 제4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4조”를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5조”로,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2항에 따라”로, “법 제44조”를 “법 제40조”로,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도로법, 도로정비촉진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각 개별법에 의한다.”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각 개별법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4조의 규정에 의거”을 “제27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내”를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사천시공보

제292호(21)

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이내”를 “위원장 1명과 위원 14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천시환경기본조례”를 “「사천시 환경기본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공보

제292호(22)

사천시 조례 제101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12일

사천시장 정만규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

사천시 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공보

제292호(23)

사천시 조례 제101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12일

사천시장 정만규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상품”을 “제품”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4조, 제5조 본문, 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사천시 공보

제292호(24)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중 “상품” 을 “제품” 으로 한다.

제18조 중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을 “녹색제품의 생산·구매촉진” 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4항제3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으로 한다.

사천시 공보

제292호(25)

사천시 조례 제101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12일

사천시장 정만규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를 “사천시 낙동강수 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이하 “법”이라 한다)” 을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중 “법” 을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영 제21조를” 을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50퍼센트 범위 안” 을 “50퍼센트 범위”로 한다.

사전시공보

제292호(26)

제19조 중 “국고보조금관리규정” 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공보

제292호(27)

사천시 조례 제101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12일

사천시장 정만규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를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중 “특별회계”를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법”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사천시재무회계규칙”을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6조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공보

제292호(28)

사천시 조례 제101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12일

사천시장 정만규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조, 제19조, 제20조” 를, “제19조, 제20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시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방지시설업자에 위탁할 수 있다.” 를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을 따른다.”로 한다.

제3조 중 제3항은 삭제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를 “「지방세기본법」 제118조부터 제126조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공보

제292호(29)

규칙

사천시 규칙 제515호

사천시조례 · 규칙집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5일

사천시장 정만규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체결) ①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 취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융자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사천시공보

제292호(30)

제4조(융자지원 대상) ① 조례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1. 농어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어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
 2. 법인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3. 생산자단체·조직 : 품목별 전문 생산자단체 및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
 4. 공동사업장 : 5명 이상 농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정부지원사업장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체, 공동사업장, 농어업인 등
- ② 총 지원금 중 지원 비율은 농어업인에게 80퍼센트, 그 외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에 20퍼센트로 안배하여 지원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2. 제3조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융자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자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융자신청기간 및 융자절차
4. 융자대상 선정절차 및 방법
5. 융자취급기관
6. 대출절차·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대출금리) ①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금융기관 취급수수료 연 1퍼센트)로 하되, 금리의 변동과 기금의 적립액 등을 감안하여 사천시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사전시공보

제292호(31)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하고 이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융자금이 상환연체가 되어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사후조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③ 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 상환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자와의 계약 체결
2. 융자금 상환고지서 송달
3. 융자금 상환 및 독촉
4. 그 밖에 융자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

제8조(보고 등)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반기 말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대출실적
2. 융자금의 상환실적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공보

제292호(32)

[별지 제1호서식]

용자신청서

(농어업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최종학력 :
- 주작목 :
- 영농경력 :
- 활동단체명 :
- 포상실적 :
- 영농·어규모 :
- 연간소득규모 :
- 용자신청금액 : 백만원 (시설 , 운영)
- 최근 2년간 용자대출금액 :
- 지원자금 연체여부(시장·군수확인)기재 :

위와 같이 용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사천시장 귀하

사천시공보

제292호(33)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농어업인)

1. 개요

성명			주소		
업종			농지규모	전, 답, 과수원, 시설하우스	
농어업경력			가축(어선)규모		
주요생산시설			생산능력		
종별	단위	수량	제품명	단위	수량

2. 사업계획

(단위:백만원)

신 증 설	사업명			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시설규모			소요자금		조달계획		
	공사착공일			소요처	금액	자금구분	금액	
	건설기간					자기자금		
	완공예정일					차입금		
	가동예정일							
	공사진척도							
매 입	연간생산 능력증가	기존제품:						
		신제품:						
	매입시설명	매입처	규모	매입 금액	대금 미납액	연간생산증대효과		비고

사천시공보

제292호(34)

[별지 제3호서식]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사천시 귀중

이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의 신용정보를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직업, 연락처 등
- 신용거래정보(본 신청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 카드 발급 및 해지, 개인대출 및 채무보증, 한도, 사용금액 (현금서비스 포함), 연체기록 등
 - 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 본인은 본 동의서를 읽고 이해하였으며, 본 동의서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사천시공보

제292호(35)

[별지 1-1호서식]

용자신청서 (법인·생산자단체)

- 법인(생산자단체)명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설립일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자본금 :
- 주요생산품목 :
- 연간소득액 :
- 종업원(참여)수 :
- 용자신청액 : 백만원(시설 , 운영)

위와 같이 용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사천시장 귀하

사전시공보

제292호(36)

[별지 2-1호서식]

사업계획서 (법인 · 생산자단체)

1. 사업체 개황

1) 개요

(단위:백만원)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업 종	주요제품	설립일						
납입자본	매출액	구 분						
종업원수	노사분규	거래은행 주: 부:						
특기사항								
사업장		주요생산시설	생산능력					
소재지	규 모	생산제품	종 별	단 위	수 량	제품명	단 위	수 량

2) 경영자 현황(실질경영자)

직위	성명	연령	동업계입력	실질경영자 와의 관계	학력	주요경력

3) 주주현황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4) 연혁

일자	내용

사전시공보

제292호(37)

2. 조업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전기 (년)		당기 (년)		추정 (년)		
	품명	단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원재료조달	계							
생산현황	계							
판매현황	계							

주) 원재료조달액 =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당기원료재료 매입액

생 산 실 적 = 손액계산서상의 당기제품 제조원가

판 매 실 적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사전시공보

제292호(38)

3. 재무상태

1) 요약대차대조표

(단위:백만원)

구분	전기말 (년)	당기말 (년)	추정 (년)
유동자산			
당좌자산			
(외상매출) (받을여름)			
기타자산			
기타유동			
투자기관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			
자산총계			

구분	전기말 (년)	당기말 (년)	추정 (년)
유동부채			
(외상매입) (자금여음)			
고정부채			
이연부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익)			
자본총계			
부채자본총계			

2) 요약손익계산서

구분	전기말 (년)	당기말 (년)	추정 (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금융비용)			
경상이익			
특별손이익			
세전손이익			
당기순이익			

3) 요약제조원가명세서

구분	전기말 (년)	당기말 (년)	추정 (년)
당기제조비용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감가상각비)			
기초제공품			
제고			
기말제공품			
제고			
타계정대체			
당기제품제조원가			

사전시공보

제292호(39)

4. 사업계획

○ 운영자금

1) 매출 및 손익전망

(단위:백만원)

구분	당해연도	년	년	3년평균	과거 3년평균
추정매출액					
매출증가율					
손이익					

2)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백만원)

소요자금				조달계획				
원재료비	인건비	기타	계	자기자금	증자	차입금	기타	계

○ 시설자금

(단위:백만원)

신 증 설	사업명	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시설규모	소요자금		조달계획			
	공사착공일	소요액	금액	자금구분	금액		
	건설기간			자기자금			
	완공예정일			증자			
	가동예정일			차입금			
연간생산 능력증가	공사진척도						
	기존제품:						
	신제품:						
매입	매입시설명	매입처	규모	매입금액	대금미납액	연간생산증대효과	비고

사천시 공보

제292호(40)

훈령

사천시 훈령 제260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년 7월 12일

사천시장 정만규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정원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사천시 공보

제292호(41)

[별표]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 관련)

□ 총괄

직급별 부서별	합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정무직	지도직	연구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소계				
합계	841	702	5	44	196	212	175	70	101	7	17	9	68	4	1	32	1	
기획감사담당관	21	17		1	5	9	1	1	4					4				
전략사업담당관	12	12		1	4	5	2											
총무과	34	22	2	1	6	5	8		9	3		2	4	1	1		1	
정보법무과	16	15		1	4	5	4	1	1					1				
주민생활지원과	24	23		1	5	8	7	2	1					1				
사회복지과	26	24		1	7	8	5	3	2		1			1				
문화관광과	24	22		1	6	9	5	1	2		1			1				
체육지원과	19	14		1	4	5	2	2	5	2				3				
환경보호과	19	17		1	4	6	4	2	2					2				
민원지적과	27	24		1	7	6	9	1	3					3				
세무과	28	25		1	9	10	5		3					3				
회계과	22	16		1	5	3	6	1	6		2	1	3					
지역경제과	19	17	1	1	5	8	1	1	2		1			1				
공단조성과	16	15		1	3	5	4	2	1					1				
해양수산과	22	17		1	4	5	7		5	1	3			1				
도시과	22	20		1	6	5	5	3	2					2				
건축과	22	21		1	4	7	8	1	1					1				
건설과	18	16		1	5	4	4	2	2					2				
재난관리과	21	17		1	5	4	6	1	4					3	1			
도로교통과	29	23		1	6	7	8	1	6		1			5				

사천시공보

제292호(42)

직급별 부서별	합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정무직	지도직	연구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녹지공원과	17	16		1	5	5	4	1	1				1				
의회사무국	17	12	1	2	3	2	4		5				5				
보건소	79	73	1	2	22	30	16	2	4		2	1	1	2			
농업기술센터	50	15		2	6	6	1		2				2	1		32	
환경사업소	14	8		1	2	2	2	1	6		1		5				
수도사업소	13	11		1	3	2	5		2	1			1				
하수도사업소	18	14		1	5	2	5	1	4				4				
신수출장소	2	2			1	1											
사천읍	22	21		1	5	4	8	3	1				1				
정동면	15	13		1	4	4	2	2	2				2				
사남면	15	14		1	4	4	1	4	1		1						
용현면	14	13		1	4	3	2	3	1				1				
축동면	13	11		1	4	2	3	1	2		1		1				
곤양면	14	13		1	4	2	2	4	1				1				
곤명면	14	13		1	4	2	3	3	1		1						
서포면	14	13		1	4	4	2	2	1				1				
동서동	13	13		1	2	2	1	7									
선구동	11	10		1	2	2	3	2	1				1				
동서금동	10	9		1	2	2	2	2	1		1						
별용동	14	12		1	2	4	2	3	2				2				
향촌동	11	10		1	2	2	3	2	1		1						
남양동	10	9		1	2	1	3	2	1				1				

사천시공보

제292호(43)

□ 기획감사담당관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1		1	5	9	1	5		
일반직	소 계	17		1	5	9	1	1		
	행정	8		1	4	3				
	시설	2				2				
	행정+세무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전산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1	1			
기능직	행정+농업+녹지	1				1				
	소 계	4						4		
	사무	3						3		
	기 계	1						1		

□ 전략사업담당관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2		1	4	5	2			
일반직	소 계	12		1	4	5	2			
	행정	5			2	2	1			
	시설	1					1			
	시설+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3		1		2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사천시공보

제292호(44)

□ 총무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직	정무직
총합계		34	2	1	10	5	10	4	1	1
일반직	소계	22	2	1	6	5	8			
	행정	17	2	1	6	2	6			
	행정+전산	2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시설	1				1				
기능직	소계	9			3		2	4		
	기계	2			1			1		
	운전	3			1		2			
	사무	4			1			3		
연구직	소계	1							1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	소계	1			1					
	비서요원	1			1					
정무직	소계	1								1
	정무직	1								1

□ 정보법무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6		1	4	5	4	2		
일반직	소계	15		1	4	5	4	1		
	행정	1			1					
	행정+전산	5			1	1	2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전산+공업+방송통신	4				4				
	전산+방송통신	2					2			
기능직	소계	1						1		
	사무	1						1		

사천시공보

제292호(45)

□ 주민생활지원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4		1	5	8	7	3		
일반직	소 계	23		1	5	8	7	2		
	행정	5			1	2		2		
	사회복지	4			1	2	1			
	행정+사회복지	13		1	3	4	5			
	행정+농지+농업 +해양수산	1					1			
기능직	소 계	1						1		
	사무	1						1		

□ 사회복지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6		1	7	9	5	4		
일반직	소 계	24		1	7	8	5	3		
	행정	9		1	3	4		1		
	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9			4	2	2	1		
	행정+보건	1					1			
	행정+사회복지+ 보건+간호	3				2	1			
	행정+공업+ 해양수산+시설	1						1		
기능직	소 계	2				1		1		
	운전	1						1		
	사무	1				1				

사천시공보

제292호(46)

□ 문화관광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4		1	6	10	5	2		
일반직	소계	22		1	6	9	5	1		
	행정	14		1	4	5	3	1		
	공업	2				1	1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2			2					
기능직	사회복지+시설	1				1				
	소계	2				1		1		
	기계	1				1				
기능직	사무	1						1		

□ 체육지원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9		1	6	5	2	5		
일반직	소계	14		1	4	5	2	2		
	행정	8			3	3		2		
	시설	1				1				
	행정+시설	3		1			2			
	행정+농업+공업	1				1				
	행정+공업+시설	1			1					
기능직	소계	5			2			3		
	기계	1			1					
	운전	1			1					
	사무	1						1		
	위생	1						1		
	통신+전화상담+전기	1						1		

사천시공보

제292호(47)

□ 환경보호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9		1	4	6	4	4		
일반직	소 계	17		1	4	6	4	2		
	행정	3				1	2			
	환경	5			1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공업+환경	6			2	3	1			
	행정+보건+환경	2		1	1					
기능직	소 계	2						2		
	사무	2						2		

□ 민원지적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7		1	7	6	9	4		
일반직	소 계	24		1	7	6	9	1		
	행정	6			2	1	3			
	시설	9			3	2	3	1		
	행정+세무	1					1			
	행정+전산	1				1				
	행정+시설	5		1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기능직	소 계	3						3		
	사무	3						3		

사천시공보

제292호(48)

□ 세무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8		1	9	10	5	3		
일반직	소계	25		1	9	10	5			
	행정	4		1	2	1				
	세무	7			1	6				
	행정+세무	14			6	3	5			
기능직	소계	3						3		
	사무	3						3		

□ 회계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2		1	5	5	7	4		
일반직	소계	16		1	5	3	6	1		
	행정	9		1	2		5	1		
	행정+세무	2			1	1				
	행정+시설	1			1					
	행정+시설+방송통신	2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공업+시설	1				1				
기능직	소계	6				2	1	3		
	기계	1						1		
	운전	4				1	1	2		
	통신+전화상담+전기	1				1				

사천시공보

제292호(49)

□ 지역경제과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9	1	1	5	9	1	2		
일반직	소계	17	1	1	5	8	1	1		
	행정	7		1	4	2				
	공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세무	1				1				
	행정+기술	1	1							
	행정+시설	1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해양수산	1						1		
기능직	소계	2				1		1		
	운전	1						1		
	사무	1				1				

□ 공단조성과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6		1	3	5	4	3		
일반직	소계	15		1	3	5	4	2		
	행정	4			1	1	2			
	행정+시설	10		1	2	4	1	2		
	행정+공업+환경	1					1			
기능직	소계	1						1		
	사무	1						1		

사천시공보

제292호(50)

□ 해양수산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2		1	5	8	7	1		
일반직	소계	17		1	4	5	7			
	행정	1				1				
	해양수산	6			2	1	3			
	행정+시설	1				1				
	행정+해양수산	6		1	1	1	3			
	해양수산+환경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2				1	1			
기능직	소계	5			1	3		1		
	선박항해+선박기관	4			1	3				
	사무	1						1		

□ 도시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2		1	6	5	5	5		
일반직	소계	20		1	6	5	5	3		
	행정	4				1	3			
	시설	9		1	3	1	2	2		
	행정+시설	6			3	2		1		
	행정+농업+시설	1				1				
기능직	소계	2						2		
	사무	2						2		

사천시공보

제292호(51)

□ 건축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2		1	4	7	9	1		
일반직	소계	21		1	4	7	8	1		
	행정	2			1	1				
	시설	12			2	3	6	1		
	행정+시설	7		1	1	3	2			
기능직	소계	1					1			
	사무	1					1			

□ 건설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8		1	5	4	4	4		
일반직	소계	16		1	5	4	4	2		
	행정	3			1	1	1			
	시설	7		1	1	1	2	2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2			2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기능직	소계	2						2		
	사무	2						2		

사천시공보

제292호(52)

□ 재난관리과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1		1	5	4	9	2		
일반직	소계	17		1	5	4	6	1		
	행정	4			2	1	1			
	시설	4			2		2			
	공업	1					1			
	행정+전산	2				2				
	행정+시설	1		1						
	공업+시설	3					2	1		
기능직	행정+전산+방송통신	2			1	1				
	소계	4					3	1		
	운전	1						1		
기능직	통신+전화상담+전기	3					3			

□ 도로교통과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9		1	6	8	8	6		
일반직	소계	23		1	6	7	8	1		
	행정	6			3	1	2			
	시설	4			1		3			
	행정+세무	1					1			
	행정+전산	2				2				
	행정+농업	2					2			
	행정+공업	1			1					
	행정+시설	3		1		2				
	행정+공업+농업	2				1		1		
	행정+세무+시설	1				1				
기능직	행정+농업+시설	1			1					
	소계	6				1		5		
	방호	1						1		
	운전	1				1				
	사무	3						3		
기능직	위생	1						1		

사천시공보

제292호(53)

□ 녹지공원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5	5	5	1		
일반직	소계	16		1	5	5	4	1		
	행정	3				1	2			
	녹지	5			1	2	1	1		
	행정+녹지	3			1	2				
	행정+농업+녹지	5		1	3		1			
기능직	소계	1					1			
	운전	1					1			

□ 의회사무국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2	3	2	4	5		
일반직	소계	12	1	2	3	2	4			
	행정	8	1	2	2	1	2			
	행정+시설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3				1	2			
기능직	소계	5						5		
	운전	2						2		
	사무	3						3		

사천시공보

제292호(54)

□ 보건소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총합계	79	1	2	23	33	17	3		
일반직	소 계	73	1	2	22	30	16	2		
	기 술	1	1							
	보 건	18				10	8			
	의료기술	10				5	5			
	간 호	7				4	3			
	보건진료	11			10	1				
	행정+보건	6			4	1		1		
	보건+간호	4			4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약무	8				8				
	행정+보건+간호+ 의료기술	2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행정+보건+간호+의무	1		1						
기능직	소 계	4				2	1	1		
	운 전	3				1	1	1		
	사 무	1				1				
별정직	소 계	2			1	1				
	보건위생감시원	2			1	1				

사천시공보

제292호(55)

□ 농업기술센터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50		2	6	7	1	2	2	30	
일반직	소 계	15		2	6	6	1				
	농업	4			3	1					
	행정+농업	4			1	2	1				
	농업+녹지	1				1					
	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수의	1			1						
	농업+수의+환경	2			1	1					
기능직	행정+농업+농촌지도관	1	1								
	소 계	2						2			
별정직	운전	2						2			
	소 계	1				1					
지도직	농기계교관요원	1				1					
	소 계	32						2	30		
	농촌지도관	2						2			
농촌지도사		30							30		

사천시공보

제292호(56)

□ 환경사업소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4		1	2	3	2	6			
일반직	소 계	8		1	2	2	2	1			
	공 업	1					1				
	환경	1							1		
	행정+시설	2						2			
	행정+공업+환경	3				2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기능직	소 계	6				1			5		
	운 전	6					1		5		

□ 수도사업소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3		1	4	2	5	1			
일반직	소 계	11		1	3	2	5				
	행 정	2			1		1				
	환경	3						3			
	시 설	2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2		1		1					
	보건+공업+환경	1						1			
기능직	소 계	2			1				1		
	전기+기계	1			1						
	기 계	1							1		

사천시공보

제292호(57)

□ 하수도사업소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8		1	5	2	5	5		
일반직	소계	14		1	5	2	5	1			
	행정	1			1						
	공업	1						1			
	시설	3			1			2			
	행정+시설	2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2					1	1			
	행정+공업+환경	3			1	1	1				
	공업+보건+환경+시설	1		1							
기능직	소계	4							4		
	방호	1							1		
	사무	2							2		
	통신+전화상담+전기	1							1		

□ 신수출장소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			1	1				
일반직	소계	2				1	1				
	행정	1					1				
	행정+해양수산	1				1					

사천시공보

제292호(58)

□ 사천읍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2		1	5	4	8	4			
소 계	21		1	5	4	8	3			
행 정	7						4	3		
사회복지	1						1			
시 설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3				2	1				
행정+시설	2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기능직	소 계	1						1		
	사 무	1						1		

사천시공보

제292호(59)

□ 정동면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5		1	4	4	2	4		
일반직	소 계	13		1	4	4	2	2		
	행정	2				2				
	사회복지	3				2		1		
	시설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세무+시설	1					1			
기능직	소 계	2						2		
	방호	1						1		
	사무	1						1		

□ 사남면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5		1	4	5	1	4		
일반직	소 계	14		1	4	4	1	4		
	행정	4						4		
	사회복지	2				2				
	행정+세무	1				1				
	행정+농업	3		1	2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사무	1					1			
기능직	소 계	1				1				
	사무	1				1				

사천시공보

제292호(60)

□ 용현면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4		1	4	3	2	4		
일반직	소계	13		1	4	3	2	3		
	행정	3				1	1	1		
	사회복지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기능직	행정+농업+시설	2		1	1					
	소계	1						1		
	사무	1						1		

□ 축동면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3		1	4	3	3	2		
일반직	소계	11		1	4	2	3	1		
	행정	2					1	1		
	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3		1	2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기능직	소계	2				1		1		
	사무	2				1		1		

사천시공보

제292호(61)

□ 곤양면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4		1	4	2	2	5		
일반직	소계	13		1	4	2	2	4		
	행정	4				1	2	1		
	사회복지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수의	1			1					
기능직	사회복지+세무+수의	1				1				
	소계	1						1		
	사무	1						1		

□ 곤명면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4		1	4	3	3	3		
일반직	소계	13		1	4	2	3	3		
	행정	3					2	1		
	사회복지	2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농업+녹지	3		1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수의	1				1				
기능직	행정+사회복지+시설 +환경	1					1			
	소계	1				1				
	방호	1				1				

사천시공보

제292호(62)

□ 서포면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4		1	4	4	2	3			
일반직	소계	13		1	4	4	2	2			
	행정	1				1					
	세무	1					1				
	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환경	1							1		
	행정+농업+ 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해 양수산	1						1				
기능직	소계	1						1			
	방호	1						1			

사천시공보

제292호(63)

□ 동서동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일반직	총합계	13		1	2	2	1	7		
	소계	13		1	2	2	1	7		
	행정	5					1	4		
	사회복지	2						2		
	행정+세무	1			1					
	행정+해양수산	2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	1			1					

□ 선구동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일반직	총합계	11		1	2	2	3	3		
	소계	10		1	2	2	3	2		
	행정	3		1			1	1		
	세무	1					1			
	사회복지	2				1		1		
	행정+세무	2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기능직	소계	1						1		
	사무	1						1		

사천시공보

제292호(64)

□ 동서금동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0		1	2	3	2	2		
일반직	소계	9		1	2	2	2	2		
	행정	5		1	1		2	1		
	사회복지	2				1		1		
	행정+세무	2			1	1				
기능직	소계	1				1				
	사무	1				1				

□ 벌용동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4		1	2	4	2	5		
일반직	소계	12		1	2	4	2	3		
	행정	2						2		
	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2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환경	1				1				
기능직	소계	2						2		
	사무	2						2		

사천시공보

제292호(65)

□ 향촌동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일반직	총합계	11		1	2	3	3	2		
	소계	10		1	2	2	3	2		
	행정	1			1					
	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세무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기능직	행정+농업+녹지	1					1			
	소계	1				1				
기능직	사무	1				1				

□ 남양동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일반직	총합계	10		1	2	1	3	3		
	소계	9		1	2	1	3	2		
	행정	3			1		2			
	사회복지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세무+농업	1			1					
기능직	소계	1						1		
	사무	1						1		

사천시 공보

제292호(66)

고 시

고 시 문

사천시 고시 제2012 – 120호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7. 04.

사 천 시 장

점 용 자	성 명	사천시장 (도로교통과장)	주 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하 천 명	백천천, 송포천, 삼천포천			
점용개요	위 치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죽림동, 용강동 일원		
	면 적	백천천 682 m ² 송포천 749 m ² 삼천포천 365 m ²		
	기 간	점용기간 : 영구 (공사기간 : 2012.07.04.~ 2012.12.31.)		
	목적 및 개 요	자전거도로 연결망 구축사업에 따른 목교설치 - 백천천 목교 B=3m,L=48m - 송포천 목교 B=3m,L=15m - 삼천포천 목교 B=3m,L=32m		
열람서류 : 위치도 및 관련서류 3부(건설과 비치)				

사천시공보

제292호(67)

사업대상지 토지 명세서

하천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주소	성명
백천천	계	5필지		73,322	682		
	용현면 덕곡리	536-3	천	432	23		국(건설부)
	용현면 덕곡리	536-4	천	971	54		국(건설부)
	용현면 덕곡리	536	천	71,400	526		국(건설부)
	용현면 덕곡리	536-15	천	352	57		국(건설부)
	용현면 덕곡리	536-16	천	167	22		국(건설부)
송포천	계	7필지		23,981	749		
	죽림동	1048-1	천	21,722	199		국(건설부)
	죽림동	570-3	수	981	143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외1
	죽림동	570-4	수	30	30		국(건설부)
	죽림동	570-9	수	265	263		국(건설부)
	죽림동	569-13	수	704	66		국(건설부)
	죽림동	571-11	수	55	28		국(건설부)
	죽림동	571-25	수	224	20		국(건설부)
	계	8필지		13,354	365		
	좌룡동	433-12	제	6,031	67		국(건설부)
	용강동	888-9	제	149	18		국(건설부)
	용강동	888-7	천	2,691	178		국(건설부)
	용강동	888-10	제	3,815	28		국(건설부)
	용강동	886-6	천	469	32		국(건설부)
	용강동	889-30	제	159	16		국(건설부)
	용강동	392-7	제	14	14	사천시 좌룡동90	강만주
	용강동	392-3	제	26	12	사천시 좌룡동90	강만주

사천시 공보

제292호(68)

사천시 고시 제2012-121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7-58(2007.03.02)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0-112(2010.09.28)호로 변경 결정 고시되고, 사천시 고시 제2011-143(2011.12.15)호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동금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이를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6일

사천시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나. 명칭 : 동금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20-4, 38-1 번지
- 나. 면적 : 29,548.50m²(실사용 대지 면적 29,101m²)

사천시공보

제292호(6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명 칭 : 동금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991-7 번지
다. 대 표 자 : 김 영 고
라. 대 표 자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죽림동 선제바위 37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2.07.05

5. 관리처분계획인가 주요 내용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m ²)	용 도	건축면적(m ²)	건폐율(%)	총 수	세대수	비 고
		연면적(m ²)	용적율(%)			
29,10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181.0275	17.80	지상21층 /지하1층	617세대	
		86,798.3160	224.83			

2) 분양 또는 보유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상가 면적 (m ²)	기타 건축 시설
	계	59m ²	75m ²	84m ²	101m ²	120m ²		
계	617	200	40	297	40	40	606.32	
토지등 소유자	352	196	33	94	20	9	606.32	
보유시설	-	-	-	-	-	-	-	
일반분양	265	4	7	203	20	31	-	
임대	-	-	-	-	-	-	-	

사천시공보

제292호(70)

3)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포함)

신 설					용도폐지				
종류	명칭	규모	설치 비용	관리 청	종류	명칭	규모	국공 유지 (m ²)	무상 양여 (m ²)
도로	대로 3-4	447.5m ²	조합 부담	사천시					

4) 기존 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 2012. 10월경

6. 기타

-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동금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사항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 건축과 (☏ 055-831-32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공보

제292호(71)

사천시 고시 제2012-43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률시 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사천시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 : 제2012 - 1호
2. 점용·사용 승인년월일 : 2012년 6월 26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월등도 체험부교 설치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별주부전의 고향 방문객들에게 체험거리 제공과 월등도 주민들의 편의제공 도모를 위함.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5-173번지선
5. 점용·사용의 면적 : 298m²
6. 점용·사용의 기간 : 2012년 6월 26일 ~ 2027년 6월 25일
7. 점용·사용 승인을 받은자의 성명·주소
 - 가. 성명 : 사천시장(문화관광과장)
 - 나. 주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8. 점용·사용의 승인조건 : 불임 참조

사천시공보

제292호(72)

승인조건

1. 피승인자는 승인목적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승인 목적과 달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수 없으며, 점용·사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착수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피승인자가 본 승인내용을 변경하여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시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동 시설물 설치공사 시 발생한 부유물 등에 의해 주변의 마을어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4. 동 시설물 운영 시 시설물 이용객들이 주변해역에 각종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주변 해역의 쓰레기(폐기물) 등은 발생 즉시 수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 해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5. 체험 쪽배 설치 운영 시 안전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변 마을 선착장 및 주변 해역을 운항하는 각종 통항 선박들과의 충돌방지 및 안전운항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도록 해상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수립·시행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6. 권리자가 있을 경우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한 동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어업인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제기 시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어업권자 등 권리자나 이용객들의 피해나 민원 발생시에는 피승인자가 보상 또는 민원을 전담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7.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발견 즉시,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즉시 우리 시(문화관광과)에 알려야 합니다.
8. 이용객들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므로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 및 안전시설(구명조끼, 구명 로우프 등)비치, 보험 가입 등 인명피해 사고발생 예방

사전시공보

제292호(73)

을 위한 시설물 안전성 확보와 안전관리 운영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9. 동 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사업 시행 전,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행위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기타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득한 후 공사 등의 사업 시행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10. 승인조건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본 허가와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 및 부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고 의법 조치합니다.
11. 위 승인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동 기한 내 이의 신청치 않을 시는 승인조건의 이행을 승낙한 것으로 처리합니다.